

## 【붙임 1】

# 『공공기관 방화관리 규정 적용 범위』

### □ 공공기관 범위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  
(부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경찰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  
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 2. 국공립학교 : 전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별표1 참조)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학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규정의 학교 :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유치원을 말한다)·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통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 유형별 공공기관 판단기준

#### ○ 공공기관 소유의 건축물인 경우

- ① 건축물을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
- ② 건축물을 일부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 공공기관
- ③ 건축물을 전체를 일반인이 사용(관리)하는 경우 : 일반대상을
- ④ 건축물을 일반인이 사용하거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

（）가 200

- ① 건축물을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관리)하는 경우 : 공공기관
- ② 건축물을 전체를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관리하는 경우 : 일반대상을
- ③ 건축물을 일부를 사용하거나 일반인이 관리하는 경우 : 일반대상을

## 【붙임 2】

# 『공공기관 방화관리자 책무(업무)』

○ 대통령령(「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의 조직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파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 그 밖에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시 벌칙 적용 지침

## (2안) “방화관리 규정”의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하여 벌칙 적용 기준

- 공공기관의 효율적 방화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의 위임으로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규정 위반시 벌칙 적용의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1. “규정”에 별도의 벌칙 규정이 없음으로 벌칙 적용 불가
2. “규정”의 상위법인 “법률”에 균치하여 벌칙 적용 가능  
가. “법” 각 조 및 벌칙 조항을 균적으로 벌칙 적용 가능(“규정” 각 조의 수권을 “법률” 각 조에 둠)  
나. “법”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 조항만을 균적으로 벌칙 적용 가능(“규정”의 각 조의 수권을 “법”제24조에 둠)

### (비교 예시)

- “법률”제9조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 “법률”제53조제1항제1호에서 제9조제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 소방시설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 및 화재안전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에 의한 적법성 판단 없이 법률만으로 관계인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행위의 위법성 판단은 불가함.

## (3안) “법률” 각 조(벌칙 포함)를 균으로 벌칙 적용 가능한지? “법률” 제24조(공공기관 등의 방화관리)만을 균으로 벌칙 적용 가능한지?

- 일반적으로 위임법(시행령, 시행규칙)은 법률 전체에 대한 위임임.  
(법률 각 조항이) 하위법령 각 조항의 수권(授權) 조항)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규정”은 “법률”제24조에 국한하여 위임됨.

### (1안) “규정”에 별도의 벌칙조항이 “없음”으로 벌칙 적용 불가

- 일반적으로 벌칙 규정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만들 수 있고, 대통령령인 “규정”은 벌칙을 규정할 수 없음.  
⇒ “규정”의 벌칙 불비로 벌칙 적용 불가 의견은 불합리

⇒ “규정”의 각 조항은 “법률” 제24조에 위임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규정”의 각 조에 위반된 사실은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됨.

예) “규정” 제15조(소방점검) 각 항을 위반한 것은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법률” 제53조(과태료) 제1항 제10호가 아닌 제9호에 따라 과태료가 처분되어야 함.

## □ 적용지침

-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각 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것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며,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이 가능
- 방화관리자 선임 위반의 경우 같은 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서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비록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위반하여도 법 제53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불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위반 사례】

1. 기관장의 감독 책임 및 방화관리자의 책무
2. 소방점검(종합점밀점검) 및 점검결과보고서 제출
3. 차원 소방대의 편성·운영 및 소방훈련 및 교육

## □ 시 행

- 본 지침은 「공공기관의 방화관리에 관한 규정」의 위반 사항에 대한 처리 방침으로 활용하고, 법령의 개정 또는 새로운 해석의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효함.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주요사항

## □ 주요업무

기관장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li><li>· 소방계획의 수립·시행 및 소방훈련·교육에 관한 사항</li><li>·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자위소방대의 편성 등</li></ul>
	<b>☞ 소방안전관리자 책무에 해당하는 소방안전관리 전반사항 책임</b>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감독적 직위자 중 유자격자 선임(<u>14일 내 소방서 통보</u>)</li></ul>
소방안전관리자 책무 (法 제20조 6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li><li>·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li><li>· 소방시설, 피난 및 방화시설(구획)의 유지·관리</li><li>· 소방훈련·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li></ul>
소방훈련과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소방교육(자료 2년간 보관) → 소방관서와 협동소방훈련 실시(2회 중 1회 이상) ※ 상시인원 10인 이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제외</li></ul>
소방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종합정밀점검(연 1회) 실시 후 <u>30일 이내 소방서 제출</u> ※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 제15조 삭제 후 법 제25조 적용</li><li>· <u>작동기능점검 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u>(2015. 1. 1. 시행) ※ (기존) 2년간 자체보관 ⇒ (변경) 30일 내 소방서 제출 및 보관</li><li>· 외관점검 : 월 1회 실시 후 점검결과 2년간 자체보관</li></ul>

## □ 기타사항

- 경기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 시행(2014. 5. 7)
- 소화기 안전관리 및 배치기준 등
  - 각 층마다 설치하되, 보행거리 20m(대형소화기는 30m)마다 배치
  -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 바닥면적이  $33m^2$  이상 구획된 실마다 배치  
※ 업무·교육연구시설 등은 옥내소화전 설치에 따른 소화기 감소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설치, 보기 쉬운 곳에 위치 표시
  - 소화기는 수시점검, 노후소화기 교체 등 상시 사용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소방시설등 쉽게 하는 자가 체크리스트

## □ 소화기 배치 및 관리방법

- 배치 :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20m이내 및 구획된 실(33㎡이상)마다 배치(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제4조)  
⇒ 쉬운 예) 구획 실별 소화기 1개 이상 및 복도는 3~40m 마다 1개 이상 배치  
※ 학교 교실·복도와 같은 단순구조의 건축물의 예이며, 실·공간 구조에 따라 배치방식이 상이함.

- 관리 : “소화기” 위치표지 및 월 1회 이상 외관점검  
⇒ 관리요령) 월 1회 흔들어주고, 압력계 지침이 녹색에 위치해 있는지 확인 / 압력계 없는 소화기는 교체, 내용연수 8년(권장)



## □ 옥내소화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관리

○ 옥내소화전 : 화재시 사용하기 쉽게 관창 연결 및 호스 정리	○ 수신기 : 버튼을 눌러 놓거나, 경고등 점등상태로 방치 금지
 옥내소화전함	 옥내소화전함 호스정리



## □ 소방시설 자체점검(☞점검결과 2년간 보관)

- 종합정밀점검 : 연1회, 사용승인일 속한 달의 말일까지  
○ 작동기능점검 : 연1회, 종합정밀점검 받은 달부터 6개월 되는 달까지  
○ 외관점검 : 매월 1회(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실시하는 달 제외)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 사유(전임자 퇴직·인사이동 등)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감독직(관련 자격취득 또는 강습교육 받은)의 사람 선임 ⇒ 14일 이내 소방서장 통보